

2026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용자사업 공고

경북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「2026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용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23일

경상북도지사

1. 용자개요

- 추진근거 :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- 용자규모 : 50억원
- 대상지역 : 경북 도내 시군
- 사업내용 :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영위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용자
 - (시설자금) 호텔 등 관광시설 신축, 개보수 등을 위한 자금
 - (운영자금)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 등 관광사업체 운영자금

<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종류 >

1. 여행업 : 종합여행업, 국내외여행업, 국내여행업
2. 관광숙박업 : 호텔업(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, 호스텔업, 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업), 휴양콘도미니엄업
3. 관광객 이용시설업 : 전문휴양업, 종합휴양업(제1종, 제2종), 야영장업(일반야영장업, 자동차야영장업), 관광유람선업(일반관광유람선업, 크루즈업), 관광공연장업,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, 한옥체험업
4. 국제회의업 : 국제회의시설업, 국제회의기획업
5. 카지노업
6. 테마파크업 : 종합테마파크업, 일반테마파크업, 기타테마파크업
 - ※ 기존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명칭 변경
7. 관광 편의시설업 : 관광유희음식점업, 관광극장유희업,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, 관광식당업, 관광순환버스업, 관광사진업,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, 관광펜션업, 관광케도업, 관광면세업, 관광지원서비스업

2. 용자별 주요내용

① 시설자금 용자

- (지원내용) 관광시설 신축, 증축, 개보수 등을 위한 자금 용자
- (신청자격) 「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(또는 예정자) 중 공고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둔 자

<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(용자대상자 자격) >

1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
2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자
3.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내의 기반시설 또는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추진 중인 자
4. 용자신청연도에 개보수 중이거나 개·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
5.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시행 승인, 지정 또는 인·허가를 받은 자와 대상사업을 등록한 자

- (신청요건)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2026년 내 공사 착공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(사업계획 승인, 건축(용도변경) 허가 등)를 이행한 자
 - 신축의 경우,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(매입완료)된 업체
 - 증축·개보수의 경우, 공고일 기준 1년 전*부터 영업 중인 업체

* 관광사업 등록증 기준, 1년 이상 관광사업을 영위하여야 함

※ 도 및 시군과 관광 관련 시설 투자유치 체결 사업자 우선 지원(증빙 필요)

❖ 지원 제외대상

- 동일 사업장에 대해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용자사업 선정업체(용자상환 완료 후 재신청 가능)
- 유흥주점, 나이트클럽 등 호화사치성 시설 또는 헬스클럽 등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비용
- 동일 사업장에 대해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, 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업체
- 신축한 지 5년 미만의 건물 또는 시설물의 개·보수 등 비용
-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·비품 구입비용
- 직전 5년 이내(2021~2025년) 2회 이상 관광진흥기금 용자를 지원받은 업체
- 사업포기자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1회 제한('24년부터 적용)
- 기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

- (지원금액) 최대 10억원 이내
- (대출금리) 0.8%
- (상환조건) 5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

② 운영자금 용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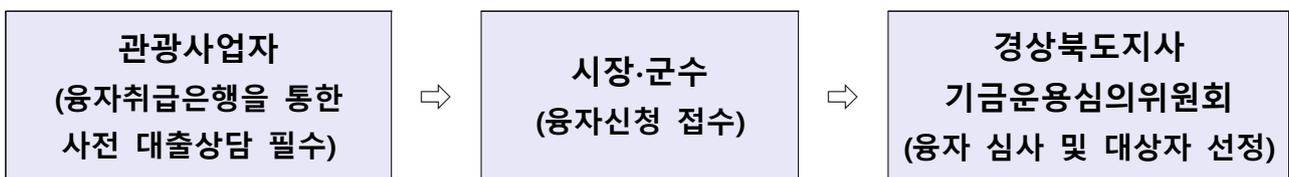
- (신청자격) 시설자금 용자와 동일 ※ 시설자금과 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
- (지원내용)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(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)에 한해 지원
※ 재무제표,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
- (지원금액) 최대 2억원 이내(최근 5년의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%)
※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1년 미만 업체의 경우, 최대 3천만원 한도 내 지원
- (대출금리) 0.8%
- (상환조건)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

※ 지원 제외대상

- 동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, 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업체
- 직전 5년 이내(2021~2025년) 2회 이상 관광진흥기금 용자(시설자금 포함)를 지원받은 업체
- 사업포기자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1회 제한('25년부터 적용)
- 기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

3. 접수개요

- 공고기간 : 2026. 2. 23.(월) ~ 2026. 3. 13.(금)
- 접수기간 : 2026. 3. 9.(월) ~ 2026. 3. 13.(금) (5일간)
※ 접수시간 : 평일(토, 일 공휴일 제외) 09:00~18:00
- 접수처 : 22개 관할 시군 관광부서



- 접수방법 : 우편 또는 방문 접수
 -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(18:00) 도착분에 한함
 - ※ 우편 접수분은 2026. 3. 13.(금)까지 해당 시군 도착분까지만 인정
- 용자취급은행 : (주)아이엠뱅크(舊 대구은행), 기업은행, 경남은행, 부산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농협은행(지역농협은 대출 불가)

4. 신청서류 ※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① 시설자금 용자

○ 제출서류(공통)

- 용자신청서(붙임1), 대출상담확인서(붙임2), 사업계획서(붙임3)
 - 견적서, 사업계획승인 사본, 건축허가(신고)서 사본 또는 개발행위 허가서, 토지대장
 -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
- ※ 관광사업체 등록을 전제로 용자받은 사업자는 공사 완료 후 반드시 해당 업종으로 등록·신고·지정 등을 완료하여야 함
-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*

* (예시) 야영장업의 경우 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등

○ 증축 . 개보수의 경우,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

-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)

② 운영자금 용자

- 용자신청서(붙임1), 대출상담확인서(붙임2), 운영자금 소요내역서(붙임4)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,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*(최근 5년 이내 모두)

* 재무제표 작성 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

5.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

○ 선정기준

- 기금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
- 사업계획의 적정성, 사업주체의 역량,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
- 최종 용자금액은 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

○ 선정시기 : 2026. 3월 중

○ 선정결과 :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
○ 용자실행기한 : 2026. 12. 4.(금)까지

- ※ 용자신청기한이 아닌 용자실행기한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(2026년 12월 4일 전 반드시 공사를 착공 또는 준공하고 용자를 실행해야 함)
- ※ 용자를 분할하여 실행하는 경우, 최초 용자일이 반드시 2026년 12월 4일까지 실행되어야 합니다.(2026년 12월 4일 전 공사를 착공하고, 1차 용자를 2026년 12월 4일 이전에 실행했으나, 미지급 중인 공사비는 용자 가능)
(예시) 용자 선정액 7억 원 → 2026년 10월 1일에 공사를 착공하고, 1차 용자 2억 원을 2026년 11월 28일에 실행할 경우, 나머지 5억 원은 해당 공사비에 한해 2026년 12월 4일 이후 실행 가능
- ※ 기한 내 용자 미실행 시 사업포기로 간주됩니다. 단, 불가피한 사유로 용자실행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.

6. 유의사항

- 용자신청자는 등록(예정)업종, 공사 형태(신축, 증축, 개보수) 등에 따라 용자 신청 시 업종별 필수 신청서류를 반드시 첨부
 - ※ 업종별 신청서류는 문체부의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지원지침 준용
- 용자 신청 전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등 업종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 - ※ 업종별 사전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시군 관광부서로 문의(연락처 별첨)
-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은 동시 신청 및 지원 불가
- 용자선정액은 최대 대출 가능액이며, 은행의 용자심사를 통하여 용자선정액 이내에서 최종 용자금액이 결정됨
 - ※ 용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, 재무건전성, 사업성, 상환능력, 담보규모에 따라 용자 신청을 거부하거나, 용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충분히 협의
- 용자받은 사업자는 공사 완료 후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사업으로 등록·신고·지정 등을 필하여야 함
- 중복 사업체(법인/대표자/사업장)의 경우 최대 1건만 지원하며, 사업 포기자는 향후 사업 참여 1회 제한
- 대출상담은행과 용자신청은행은 동일*해야 함
 - * 예시) 대출상담은행-농협은행, 용자신청-대구은행(x), 농협은행(O)
- 대상자 선정 후 중요사항(사업자명, 사업계획, 사업기간 등)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, 시군 관광부서를 통해 사전 승인 요청(붙임5 서식)

- 용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, 용자사업자가 기존 취급은행 및 변경할 은행과 협의 후 시군 관광부서로 용자취급은행 변경 요청(붙임6 서식)
- 용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내역이 포함된 결산서 1부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(수정 및 경정·정정신고 등 포함) 후 1개월 이내에 시군을 통해 경상북도(관광정책과)로 제출하여야 함
 - ※ 단,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용자금 집행내역(세무 신고서류,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)을 1개월 이내 제출
- 이 외 업종별 용자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「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지원지침」 준용
- 공고 내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음

8. 용자금 회수 및 제재

- 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, 용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, 기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 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용자사업자가 공사종료 후 자금 신청 업종으로 등록(신고·지정 포함)하지 않거나, 용자금 상환 완료 전에 해당 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, 용자금을 활용해 공사 완료 후 해당 사업장을 타 업체에게 임대하는 경우 등
-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(처분일자 기준) 3회 이상 행정처분(주의)을 받을 경우
- 사후 제출서류(결산서, 세무신고서류 등)상 기금 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
- 위 회수사유 경중에 따라 기금선정내역을 취소하고,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

9. 문의처 : 경북도청 관광정책과(☎054-880-3185) 및 시군 관광부서

참고**시군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용자사업 접수처**

기관명	담당부서	연락처	비고
포항시	관광산업과	054-270-2248	
경주시	관광컨벤션과	054-779-6984	
김천시	관광진흥과	054-420-6633	
안동시	관광정책과	054-840-6395	
구미시	낭만관광과	054-480-2668	
영주시	관광진흥과	054-639-6601	
영천시	관광진흥과	054-330-6702	
상주시	관광진흥과	054-537-7102	
문경시	관광진흥과	054-550-6397	
경산시	문화관광과	053-810-5366	
의성군	관광문화과	054-830-6098	
청송군	관광정책과	054-870-6069	
영양군	문화관광과	054-680-6411	
영덕군	문화관광과	054-730-6533	
청도군	문화관광과	054-370-2378	
고령군	관광진흥과	054-950-6655	
성주군	관광과	054-930-6985	
칠곡군	문화관광과	054-979-6087	
예천군	문화관광과	054-650-6391	
봉화군	문화관광과	054-679-6344	
울진군	문화관광과	054-789-6902	
울릉군	관광산림과	054-790-6394	

[붙임 제1호 서식]

2026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용자 신청서

신청일자*	. . .	신청인*	(인)
취급은행*	은행	지점 (전화: - -)	

* 별표 부분은 필수 작성 항목

1. 신청인 정보

① 사업장명*			② 업체규모*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
③ 법인명* (신청인)			④ 업체결산*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(월)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⑤ 대표자명*	⑥ 사업자등록번호* (생년월일)		⑦ 법인등록번호	
⑧ 사업장주소*	(우편번호)			
⑨ 법인주소*	(우편번호)			
⑩ 담당자*	성명:	이메일:		
	전화:	팩스:		

* 주소 및 우편번호 등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⑩업체현황*	2024년 실적	2025년 실적	2026년 계획
총 자산	()	()	()
매출액	()	()	()
운영자금 신청업체만 작성	영업비용 ¹⁾ () ²⁾	()	()
	집기·비품·차량운반구 (신청업체만 작성)		
임직원(명)	()	()	()

주1) 영업비용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계액 기재

주2) 관광사업 이외의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, ()안에 관광사업 부분의 금액을 표기하고, 구분 기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비중(%)을 표기하시기 바람

2. 신청내용

- ① 신청횟수*: 1회(처음 신청) 2회 3회
- ② 사업구분*: 신축 증축 개보수 운영자금
- ③ 특이사항 : 숙박시설 도·시군과 투자유치 체결 사업자
- ④ 신청업종*: _____ (_____ 급)
- ⑤ 관광사업 등록번호: _____
- ⑥ 관광진흥기금 미상환잔액*: _____ 백만원
- ⑦ 관광진흥기금 신청금액*: _____ 백만원 (대출희망시기 : 2026년 _____ 월)

3.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*

- 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기 투자액 ①	'26년 신청액			'26년 이후 소요액 ③	합 계 (①+②+③)
		'25년 미지급액 ³⁾	'26년 소요자금	계 ②		
소요 자금	지원대상 ①					
	지원대상 외 ⁴⁾ ②					
합 계 (①+②) = (③+④+⑤+⑥+⑦)						
조달 계획	관광기금 ③					
	관광기금 외 은행자금 ④					
	자기 자금 ⑤					
	기타 자금 ⑥					

주3) '25.1.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('25년도 내 준공된 공사 제외)

주4) 시설자금의 경우 토지매입비,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·부품 구입비용 등

4. 담보계획*

(단위: 백만원)

순번	담 보 물 건	담보가액	비 고

* 반드시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작성 바람(대출상담확인서 작성 시 함께 기재)

5. 첨부서류

구분	첨 부 서 류	비고
시설 자금	① 대출상담확인서(붙임2), 사업계획서(붙임3) ② 해당업종의 등록·신고·지정 등을 증명하는 서류(관광사업등록증 등) ③ 사업계획승인 사본, 건축허가(신고)서 사본 또는 개발행위허가서 ④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을 증빙할 세무신고 서류(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) ⑤ 토지대장 ⑥ 그 밖에 지원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(견적서, 사업자등록증 등)	
운영 자금	① 대출상담확인서(붙임2), 운영자금 소요내역서(붙임4) ②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(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 제출) ※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모두 제출	

6. 체크리스트 *

○ 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

구 분	항 목	검토결과	
		신청인	취급은행
자기자금 조달 가능성	융자 선정금액이 신청금액에서 감액되어 배정될 경우, 계획사업 착수 가능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착수 <input type="checkbox"/> 포기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미확인
	상기 항목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수될 경우, 계획사업 일정 지연여부 및 지연기간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연(월)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연안됨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미확인
담보제공 능력	금번 신청금액에 상당하는 담보가액 관련, 담보제공 가능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가능 <input type="checkbox"/> 불가능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미확인
대출원리금 상환가능성	기금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공사 완료 후 발생수익금 자료(예상 손익계산서 등) 제공 가능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가능 <input type="checkbox"/> 불가능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미확인
업종별 필요서류	융자신청서 및 업종별 필요서류 제출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제출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미확인

「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2026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인)

경상북도지사 귀하

용자신청서 작성안내문

※ 용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시시오.

- 필수항목 : *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작성(누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)
- 취급은행 : 대출상담확인서를 발급받은 은행을 기재(은행의 담당자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)
(주)아이엠뱅크(舊 대구은행), 기업은행, 경남은행, 부산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농협은행)

1. 신청인 정보

- ① 관광기금을 실제 소요하는 공사현장 또는 운영업체 명칭
 -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으로 표기
- ② 해당되는 업체규모에 √ 표시
 - 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
- ③ 개인은 신청자명, 법인은 법인등록증상의 법인명, 법인이 아닌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 기재
- ④ '예'로 표시한 업체는 결산서가 발행되는 월을 반드시 기재
- ⑤ 법인은 대표이사명을 기재(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 기재)
- ⑥ 개인은 대표자의 생년월일(주민등록번호 앞 6글자), 그 외는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번호 기재
- ⑦ 신청업체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기재
- ⑧ ①사업장의 실 주소지
- ⑨ ③법인의 실 주소지
- ⑩ 업체에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대출업무를 실제로 관리하는 담당자 정보 기재
- ⑪ 근사치라도 반드시 기재(임직원: 명, 그 외: 백만원)

2. 신청내용

- ① 이번 신청을 포함한 관광기금을 신청한 횟수(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포함)
- ② 해당 사항에 √ 표시
- ③ 용자금 투입 사업장이 숙박시설이거나, 도·시군과 투자유치 체결 사업자일 경우 기재
- ④ 신청 업종 반드시 기입, 호텔업은 신청 당시 호텔등급 기재
 - 관광사업 등록예정 업체인 경우 등록예정업종 기재(예. 관광호텔업 등록 예정)
- ⑤ 관광사업 등록증(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포함) 사본 제출업체는 반드시 기재(등록예정업체는 미기재)
- ⑥ 대출 중인 관광기금이 있으면 총 대출잔액 기재(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포함)
- ⑦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대출을 희망하는 월 기재

3. 소요자금

- 소요자금은 기금지원대상과 그 외 자금으로 구분하여 표기

① 시설자금

- 지원대상

- 공사금액 중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, 구축물, 기계장비 및 비품 등
- '25. 1. 1.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('25년도 내 준공된 공사 제외)

- 지원대상 외

-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3호,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,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-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
- 토지매입비
-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·비품 구입비용

② 운영자금

- 작성 제외

4. 담보계획

-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각종 담보 취급 가능
-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, 기성고 검사, 담보 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금액 산정
- 선정된 기금이 담보 등 은행과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전, 신청 후, 공사 중에 은행과 긴밀히 협의 바람
- 담보물건은 계획시설, 부동산, 예금 등 담보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, 담보가액은 (예상) 시가를 기재함

5. 체크리스트

- 체크리스트 미작성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융자선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참고사항

- 결산서 작성 업체는 대출내역이 포함된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(수정 및 경정·정정신고 등 포함) 후 1개월 이내에 시군을 통해 경상북도 관광정책과로 제출
- 단,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(세무신고서류,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)을 1개월 이내 제출

2026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사업계획서(신축)

신청인	성명 (대표자)			생년월일 (법인번호)		
	주소				연락처	
업종 (등록예정)				상호명		
건설장소				공사기간		
규모		지상 지하 층 층	대지면적	건축연면적	건물면적	
			㎡	㎡	㎡	
			객실수 사이트수 등	동 실		
부대시설						
소요자금		억원(용자 억원, 자담 억원)				
사업의 필요성		(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작성)				

실질적인 사업목적 및 기간, 공사 및 예산내역, 상환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

경상북도지사 귀하

2026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사업계획서(증축)

신청인	성명 (대표자)		생년월일 (법인번호)			
	주소			연락처		
업종				상호명		
건설장소				공사기간		
규모	당초	지상 지하	층 층	대지면적	건축연면적	건물면적
				m ²	m ²	m ²
				객실수	동	실
	변경	지상 지하	층 층	대지면적	건축연면적	건물면적
				m ²	m ²	m ²
				객실수	동	실
부대시설						
소요자금		억원(융자 억원, 자담 억원)				
사업의 필요성		(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작성)				

실질적인 사업목적 및 기간, 공사 및 예산내역, 상환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

경상북도지사 귀하

2026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사업계획서(개보수)

신청인	성명 (대표자)		생년월일 (법인번호)		
	주소			연락처	
업종				상호명	
건설장소				공사기간	
규모		지상 지하 층 층	대지면적	건축연면적	건물면적
			m ²	m ²	m ²
			객실수	동실	
부대시설					
소요자금		억원(융자 억원, 자담 억원)			
사업의 필요성		(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작성)			

실질적인 사업목적 및 기간, 공사 및 예산내역, 상환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

경상북도지사 귀하

[붙임 제4호 서식]

2026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운영자금 소요내역서

업 체 명		대표자명	(인)
사업자등록번호		연 락 처	

상세내역 (예시)	소요액	비고
예) 직원 급여	10,000,000 원	
예) 사무실 임차료	10,000,000 원	
예) 사무용품 구입(컴퓨터, 책상 등)	5,000,000 원	
예) 홍보비(인터넷 광고료 등)	4,000,000 원	
예) 유지관리비(건물 도색, 장비 수리 등)	1,000,000 원	
	원	
	원	
	원	
	원	
	원	
	원	
총 계	30,000,000 원	

- ※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운영자금은 **2026년도에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** 신청 가능
- ※ 이자비용, 법인세 등 영업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은 신청 불가
- ※ 필요한 금액을 초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시 회수 조치

[붙임 제5호 서식]

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용자사업 변경 신청서

1. 용자승인업체 현황

업체 현황	업체명		대표자 (공동대표)		
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전화번호	010-	
	주소				
용자 내용	자금용도	대출액(또는 잔액)	용자선정일	용자실행기한	대출기간
	신축, 개보수 등				12년 등

2. 변경사항

당초	
변경	
사유	

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(사업계획의 변경)에 따라 위와 같이 「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용자사업」 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신청인 : (직인)

경상북도지사 귀하

